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11

발 간 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을 통한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올바른 연구의 방향과 해서는 안 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시,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인식 확산, <연구윤리포럼> 개최 지원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의 함양과 연구자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 확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연구윤리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지식과 경험도 일정 부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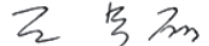
그렇지만 연구윤리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별, 국가별 연구 문화의 특성에 따라 세부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쟁점도 달라 연구윤리의 일반적이고 표준(standard) 만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궁금증이 증가하면서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크고 작은 여러 고민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 조연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도 않고 선례를 참조해 볼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자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례집의 발간을 절실히 요청해 왔었습니다.

본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은 이러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길라잡이가 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집에 제시된 질문들은 그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접수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별한 것입니다. 이 선별된 질문들을 다시 연구윤리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답변을 작성하였고, 답변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궁금하고 고민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얻기 위해 가까이 두고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응답집이 바람직한 연구 수행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익하게 참조하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연구설계

-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2
-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3
-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



연구수행

-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6
-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7
-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8
-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9
-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10
-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1
-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
-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4
-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5
-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17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18
16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19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21
18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22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23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24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26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27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8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29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30
27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31
28	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33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34



연구발표

-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46
-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48
-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50
-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CHAPTER 4

저자표시

-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66
-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중복게재

-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81
-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82
-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84
-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86
-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89
-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90
-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 표절인가? 91
-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92
-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94
-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95
-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96
-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7
-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98
-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99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100
77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101
78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102
79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103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104
81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105
8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论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106
83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 중복게재인가?	107
84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109
85	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110
86	과제물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써도 자기표절인가?	112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13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114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116
90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학위논문에서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118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119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120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121
94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122



연구부정행위 검증

-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124
-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26
-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128
-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129
-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130
-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131
-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133
-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134
-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135
-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36
-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37
-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138
-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140
-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41
-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143
-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144
-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45
-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6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48
114	중복게재 판정 시 논문의 선후 판단기준은?	149
115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가?	150
116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	151
117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53
118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154
119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6
120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는가?	157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158
122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159



IRB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Q. 1 ~ 3



QUESTION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자신의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이었던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중 일부를 기반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선행 절차 등은 무엇이 있는가?



A N S W E R

- ❖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학위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전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는 출처표시를 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 다음으로,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사사표기나 출처표시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 또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 성과의 저작권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참여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활용하는 내용(데이터 포함)이 이미 발표된 경우라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고 사용하여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연구대상자의 대화를 녹취, 기록하여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녹취나 기록이 가능한가? 적절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IRB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녹음이나 녹화를 수반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의해 잘 폐기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그 목적이나 절차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의 과정이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가 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며, 혹시라도 불편할 경우 언제든지 녹음이나 녹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 기록을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닐뿐더러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9-7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5.

QUESTION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N S W E R

◆ 공동연구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연구진들이 특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동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 연구진 각자의 역할과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방법, 논문의 공동저자 결정과 순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 분배 등에서 공동연구진 사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므로 사전에 명확히 문서의 형태로 합의문을 남기는 것이 좋다. 특히 공동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인 경우 기관이나 국가마다 연구 관리 체계와 지식재산권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2-189.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8.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2

연구수행



Q. 4 ~ 29

QUESTION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 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A 연구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B 병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B 병원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심의를 받아 10여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때 A는 B 병원으로부터 연구 승인 및 연구 데이터의 제공 및 사용 허락에 대한 서류는 획득치 않았다. A와 B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미 발표한 논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SWER

2013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전 또는 이후의 사례인가에 따라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A연구자는 B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연구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대해 B 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A연구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B 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B 병원 또한 A연구자의 연구 수행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해당 학술지에서 IRB 심의를 받았다는 증빙을 요청한다면 정상적인 심의 결과의 제출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저널로부터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저널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여 게재 철회와 같은 후속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하며, B 병원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7-2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49-5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5.

QUESTION
5타인의 연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시중에 출판된 책자에서 신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수행이 가능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사안과 같이 특정의 도서에서 기술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서 기술된 문장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티브로 삼는 것은 해당 도서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질의자가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허락은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연구 결과물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후속 연구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 첫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이후 후속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원저자에게 동의를 얻고, 논문에도 밝히는 방법이다. 둘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특별히 인용하거나 차용하려는 바가 없다면, 원저작의 저작물과 별도로 일반화시키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즉 원저작의 저작물이 질의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수준이라면 후속 연구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후속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 간에 유사성이 없다면 크게 유념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저작자에게 후속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 측면과 다른 측면(타인의 연구 업적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재사용하는)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 근거 및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7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4-39.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0.

QUESTION
6



학술 행사에서 구두 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공개적인 인문학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가 독특한 아이디어 및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맨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연구윤리 강령이나 지침 상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포함되는가?



ANSWER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행사에서의 논문 발표나 토론 및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때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아 그 아이디어의 소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구두 발표를 함께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음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원 소유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구두 발표로 알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반적인 규칙(rule)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 연구는 00세미나에서 얻은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임”과 같이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1.

QUESTION
7**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 연구 과정에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박사논문에서는 설문지에서 확보한 4가지의 독립변수 중 1가지만을 사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의 설문지에서 나머지 3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ANSWER

1회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4개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1개 변인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나머지 3개의 변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발표하고자 할 때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가 질문의 핵심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발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즉,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핑계로 여러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에 수집한 후, 변수 하나씩 분석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출판하려는 당초의 의도는 아니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이나 한 논문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각각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통합하여 발표하는 것보다 정보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분리(이른바 쪼개기 논문)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에서 충분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논문에서 활용한 변수가 다르니 데이터 내용이나 이에 대한 분석, 논의 및 결론 등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은 동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활용되었고, 이후의 학술지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먼저 사용된 데이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와 나중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간의 연계나 차이 그리고 동일한 샘플링에서의 다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등을 기술한다면 독자들은 두 개의 논문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2.

QUESTION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동료는 무단으로 복사한 데이터를 아직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타인의 연구 데이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ANSWER

❖ 연구 자료라 함은 연구자가 조사 차원으로 수집한 타인의 자료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정리 또는 작성한 자료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각각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표절에 해당된다.

질문에서 보듯, 본 사안은 비록 무단으로 데이터를 복사해 갔지만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연구부정 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에 의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3.

QUESTION
9**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설문지는 한 번에 돌렸는데 설문을 응답한 대상자를 나누어 결과를 정리하여 따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설문 결과를 이번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 다음에는 중학생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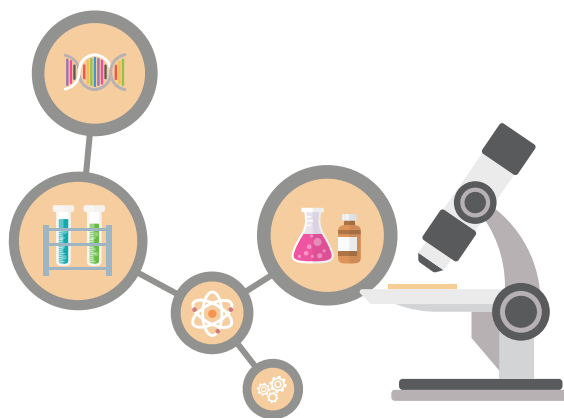
ANSWER

❖ 본 사례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이슈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 **중복게재** :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자기표절,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자기표절**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동일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과 이후의 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기 곤란할 정도로 거의 또는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같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대상이 다른 두 논문이 내용상 유사성이 적으면서 개별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 두 개의 논문이 중복게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일부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인용과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 논문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논문이 두 개로 나누었을 때보다 하나로 출판되었을 때 더 일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종합하여 보자면, 만약 본 사례에서 같은 설문 항목을 두 개의 대상(초등학생, 중학생)에게서 확보하여 같은 연구 설계, 내용, 결론 등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개별 논문의 가치가 있을지가 중요하며, 고의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작성된다면 중복게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학문 분야별 기준이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후속 논문의 투고 시에 이전 논문을 언급하면서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해당 학회에 알리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 시에 유사성 판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논문 간의 유사성을 배제하고도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단순히 동일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회에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개별 논문으로의 분리 출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10**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 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 결과 만드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NSWER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나 규칙을 연구윤리라 하고,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하거나 올바르지 않는 행동들을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 목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발표하는 위조, 일부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값을 변형시키는 등의 행위를 변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료 연구자의 부정한 연구행위에 대해 직접 동료 연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하거나 혹은 지도교수에게 제보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을 제보자(whistle blower) 혹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비록 국내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보자가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지만, 동료 연구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해당 부정행위의 개선 등이 목적이라면, 서면을 통한 무기명 제보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에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대학원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5-189.

QUESTION
11



민간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N S W E R

❖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의 가족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일단 과제 책임자의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과제에 무조건 참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얼마나 자녀가 해당 과제에서 연구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구 과제 수행 가이드 (인력구성 등)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직계 가족을 연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거나,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유의 사항 등이 관련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 관련 지침의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규정 등에 제약사항이 없고, 실제로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해의 충돌의 가능성이나 연구비 유용의 가능성을 가지는 만큼, 과제 책임자가 이해의 충돌을 회피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9.

QUESTION
12**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출판한 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 논문이 투고된 시점이 과제 시작 전이라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그 과제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과제이므로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판단할 수 없다.

연구 성과를 제출한 연구자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만일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면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만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QUESTION
13



지도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도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수령한 인건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N S W E R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정식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업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사업 계획서와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 요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공식적인 이유를 가져야 할 것이며, 임금 반환을 위한 요청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 기관 혹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 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지도교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속 기관의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 등의 담당자나 해당 연구 과제를 관리한 전문 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1.

QUESTION
14**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지도교수가 석사과정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박사과정생인 모 씨의 연구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강요하여 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하였고, 해당 석사과정생은 양도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인가?



ANSWER

❖ 다른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의 경우는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및 논문 작성,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아무리 제자를 위한 명분일지라도 다른 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임이 명백한 연구 결과의 부당한 이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5-250.

QUESTION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 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의과대학에서 특정 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이 아닌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실험 자료를 넘겨 논문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가?



A N S W E R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공유받아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부 전공이 다소 다른 연구자가 그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논문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재사용한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152.

QUESTION
16**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 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 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논문에 포함된 사진이 실제 실험모형#1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 전후 사진을 논문에 실거나, 실험 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 전후 결과 사진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연구 실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실험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고, 이 실험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중 실험 전후의 결과를 찍은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 1) 실제 실험에 사용된(동영상에 찍힌 실험모형#1)의 실험 전후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경우
- 2) 실험모형#1로 얻은 실험 결과를 논문에 실었으나, 실험 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 전과 후의 결과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경우

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 ① 내용으로 보아, 아마 실험 전의 사진은 실험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험 후의 사진은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논문을 출판하기 이전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논문 내용에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의 게재와 함께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그 결과는 어떠한 실험 조건과 실험 과정을 거쳐 무엇에서 얻은 것인지를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 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논문에 설명하는 내용(실험 조건과 실험 절차)은 실험모형#1에 대한 것으로 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사진은 실험모형#2에 대한 것을 게재하면서 실험모형#1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연구부정”의 요건을 가진다.

- 논문에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은 일치해야 한다. 실험모형#2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면 그 사진을 게재하고 실험 조건과 절차를 실험모형#2의 것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 연구부정의 예를 알아보자. 측정 data point를 10개 만들어 내는 경우, 2개의 측정 data가 예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이때 그 2개 point는 배제하고 8개 data만 표시하는 것도 “데이터 조작(변조)”에 해당된다. 원칙대로 하려면 그 2개 point도 논문 내용에 포함시키고 왜 예상을 벗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논문의 내용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 요소(논문의 최종적 결과)라면 더욱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 실험이 어렵거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 실험 모형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실험 모형#1과 실험모형#2가 각각 불완전하지만 두 실험의 결과를 통합하면 하나의 성공적 실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통합할 경우 연구진실성(충실성)에 흠이 생기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17-118.

QUESTION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자 A와 B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공동연구에 참여한 A와 B가 각자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서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여도 되는가? 만약 어느 한 연구자가 먼저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다른 연구원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ANSWER

공통 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목적이 다른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은 각각이 그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게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18



**이공계 연구 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연구 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A N S W E R

- 이공계 연구에서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과 상당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절 검색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검색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QUESTION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A 연구보고서의 “기술 개발 결과”에 인용표기만 있으면 기존의 자신 또는 타인의 B 연구보고서 등에 발표되었던 “연구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 표절(부당한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도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기존에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보고서에서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인용표기)만 한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 ❖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 중복게재도 이미 발표된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가져다 활용했음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즉, 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가져다 쓴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하였다면,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였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후의 저작물이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부분이 없을 때는 ‘출처를 표시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과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중요한 이전 연구 성과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8-24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6, pp. 156-157.

QUESTION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논문 작성 시, 논문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먼저 제안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즉, 혹시나 있을지 모를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 몇몇 사이트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는 석사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나오고, 어떤 논문들은 원문 보기가 불가능하고, 학사 논문은 나오지 않는데, 학사 논문이나 원문 보기가 불가능한 논문들, 다른 개인적인 홈페이지에서의 아이디어 등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중복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먼저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타인의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망라하여 리뷰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학술지는 관련 학문 공동체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종종 정보검색 종합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자료를 찾자 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의 졸업 논문은 해당 학교 도서관이나 웹 상에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5-257.

QUESTION
21**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B논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것이다 [A]’라고 써진 한 문장 혹은 문단 전체에 대하여 인용을 하고 싶는데, B저자가 인용한 [A] 논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B저자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인용을 할 때도 B논문을 인용했다고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저는 건축이나 디자인이 아닌 화학공학 분야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넣고 싶는데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거나, 혹은 화질이 안 좋아서 다시 제가 직접 그리고 싶은 경우에 다시 그린 그림에 인용한 논문의 출처 표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화질의 그림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ANSWER

❖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역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 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김하늘(2015, p. 13)이 ……라고 하였다(홍바다, 2016, p. 35, 재인용). In Lee’s argument (as cited in Kim, 2016) it is found that…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원저자의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할 때에도 원본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수정되었고 연구자의 어떤 견해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49.

QUESTION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제가 작년 여름까지 1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고, 그때 근무 경험을 정책학 박사논문의 일부(3파트 중 1 파트)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거 일하면서 제가 기록했던 개인적 일지와 팀장 회의 자료 등을 논문에서 인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네요. 인터뷰는 지금 다시 할 생각이기 때문에 IRB가 필요하다면 받으면 되는데 당시 기록과 회의 자료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라도 그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면 좋을 텐데요.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그 기관이 해산하고, 다른 기관이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인수받은 그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A N S W E R

- ❖ 공공기관에 근무할 당시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 회의 자료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며, 당시 기관이 가진 규정에는 회의 자료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누구에게 허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근무했던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었다면, 인수한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4-275.

QUESTION
23**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하는데, 기초내용을 [2014] 학습윤리 가이드북, 가톨릭대학교 학습윤리, 한동대 학습윤리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북에 “본 책자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는 원저작자를 표기해야 하며, 본 책자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제작된 책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을 받아가도록 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 📌 연구윤리교육과 같이 공익을 목적(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출판된 책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편집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재구성한 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또는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여(원본에서 명시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문구 포함)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원저자나 기관에서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5-239.

QUESTION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제가 석사학위 청구 논문에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민화나 문화재 사진이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그냥 사용해도 된다면 출처 표시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책에 나와 있는 유물이나 문화재 사진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출처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없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사진 대부분이 조선시대 것이어서 50년이 넘는 것들입니다.)



A N S W E R

- ❖ 저작권 보호 기간(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이 지난 저작물은 공유지식에 해당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책에 나와있는 유물이나 문화재에 대한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연구 목적의 공익을 위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출처를 밝히면 사용 가능하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5-237.

QUESTION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설문조사로 진행한 조사연구에서 설문도구 중 1가지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연구자가 개발자에게 메일로 사용 허락을 구하였고, 연락이 없어 전화로 구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자는 책임 연구자와 조사할 필드의 실정에 맞게 항목을 변경하였고, IRB가 통과되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존 연구자가 사정상 연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본 연구를 맡게 되었고 분석을 하던 중 기존 도구와 항목과 측정방법이 수정 보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연구자는 측정 도구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알리고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해 재확인하였습니다. 도구 개발자는 구두로 허가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도구가 수정 보완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측정 도구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구두 허가를 하셨던 것에 대해 상기 시켜드리고 양해를 구해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저자의 허락없이 도구를 수정 보완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원저자의 허가를 구하고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연구들은 꽤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NSWER

- ◆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 척도(검사 도구 포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여야 한다.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원저작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기 어렵거나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가 원저작자의 것과 동일할 경우(이때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출처와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 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화시켰거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경우,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되, 내용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검사 도구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상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경우에도, 원도구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원도구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7번"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bwid=354>)
 (2016년 11월 18일 접속)

QUESTION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연구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신의 세미나 또는 강연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세미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야 하는지, 정식 출판된 내용이 없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N S W E R

- ❖ 자신이 한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단행본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를 다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아직 어디에도 공식 출판된 적이 없고,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출처표시 없이도 가능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124-125.

QUESTION
27**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병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체 유연성을 측정하고자 피험자를 모집 중인데요.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강제적으로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대표를 통하여 내용을 전달 중인데, 정확히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이며 어떻게 유연성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은 채로,

1. 정해진 날짜까지 전원 생년월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과대표를 통해 제출할 것
2. 5명씩 조를 짜서 방학 중에 하루에 한 조씩 이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오전과 오후 각 1번씩 2번에 걸쳐 데이터 측정 대상으로 참여할 것
3. 각 조가 언제 방문할지 날짜는 조만간 통보할 것임 등이 현재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확연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일시를 정하여 전원 연구에 참석하게 하는 이 상황이 지금까지 배워 온 연구윤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1.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으며
2. 용납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피험자가 될 예정인 학생들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NSWER

- ❖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에 근거하여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는 일반 연구 대상자에 비해 강요, 부당한 영향, 정보 조작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더 잘 보호하고 외부 압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학과 교수로부터 연구 참여를 요청받을 때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할 때는 자기 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연구 목적이나 내용을 숙여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강요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게 될 연구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인 참여 거부로 인하여 학점 등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 35.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5-40.

QUESTION
28**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 논문의 일부를 공인된 학술지에 먼저 게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후 박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중 내용상 60% 정도를 학술지에 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박사논문을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므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 상 학술지에 먼저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관련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쟁점이 되곤 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학문 분야의 견해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1.

QUESTION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연구윤리 관련 업무 수행 중,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A과제에서 연구 수행 도중 OO특허를 출원하였고, A과제의 연구 성과물로 포함(특허출원 1건)하였습니다. A과제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OO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나, A과제는 이미 종료되어 특허등록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하던 B과제에서 특허등록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고, 동일한 OO특허를 B과제의 연구 성과물(특허등록 1건)로 포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B과제에 포함된 연구 성과물(특허등록 1건)을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만약 위조가 아니라고 하면 연구부정행위의 어떤 항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는지요?



A N S W E R

본 질문의 경우 핵심은 A과제 결과로 나온 특허를 유사한 내용의 B과제의 결과로 나온 것처럼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 ‘위조’에 해당하는가? 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에 의하면,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생성되지 않았던 연구 원자료나 연구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A과제를 통해 나온 것을 B과제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보고한 것인 바, A과제의 관점에서 보면, 위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B과제의 관점에서 보면, A과제의 목표나 연구의 중점 등과 비교할 때 얼마나 유사하고 차이가 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A과제의 결과로 나온 특허가 B과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B과제를 통해서 특허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나온 것처럼 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제의 결과로 나온 특허를 B과제의 결과로 나온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57-60.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19-25.